

## 전문직렬제도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

조영삼\*

1. 머리말
2. 일반직공무원의 전문직렬 현황
3. 일반직공무원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의 전망
4. 결론

### 1. 머리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어떤 직렬과 직급의 공무원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에 반영하여 인사조치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4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도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록물의 전문인력에 의한 전문

\* 국회기록보존소 전문직

적 관리라는 법령의 본 뜻에 타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연구직렬 신설’을 단말마적 결론으로 내세우지만 앞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왜 기록연구직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넓게는 공무원의 인사제도에서 좁게는 연구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것까지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문직렬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한정하려고 한다.

먼저 1급 내지 9급의 직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전문영역의 직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9개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직 공무원의 현황을 정리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까지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공무원분류체계 및 임용·배치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 전문요원이 어떤 직렬 및 직류의 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인가와 어떤 직급에 임용되어야 전문성과 업무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 현황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적으로 다시 구분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구분된다.<sup>1)</sup>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런 구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

---

1) 「국가공무원법」(2002. 1. 19 일부개정, 법률제6622호) 제2조(공무원의 구분)

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직위분류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구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이다. 전문요원이 법에 따라 배치된다면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행정일반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요원은 어떤 영역의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논의를 위해 기존의 행정일반의 공무원 임용 및 운용과 연구직 공무원의 임용 및 운용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 내지 9급의 직급으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882,900명(2002. 7. 31 현재) 중 연구 및 지도직(10,518), 기능 및 고용직(151,183), 사법·교육·경찰 등 특정직(431,903)을 제외하고 289,296명이 이에 해당한다.<sup>2)</sup>

이 일반직 공무원은 공안,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위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 등 10개 직군에 57개의 직렬, 91개 직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2)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참조.

<http://org.mogaha.go.kr:7003/jojik/>

<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현황<sup>3)</sup>

직군	직렬	직류 현황
공안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7개 직렬)	교정 등 10개 직류
행정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감사, 사서(12개 직렬)	일반행정 등 15개 직류
광공업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학, 자원(9개 직렬)	일반기계 등 13개 직류
농림수산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6개 직렬)	일반농업 등 14개 직류
물리	물리, 기상(2개 직렬)	물리 등 2개 직류
보건의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6개 직렬)	보건 등 8개 직류
환경	환경(1개 직렬)	일반환경 등 4개 직류
교통	교통, 선박, 항공, 수로(4개 직렬)	교통시설 등 12개 직류
시설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5개 직렬)	도시계획 등 6개 직류
정보통신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5개 직렬)	전산개발 등 7개 직류

참고: '기술직렬'은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을 말한다.<sup>4)</sup>

현재의 이 직군·직렬 체계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9월이다. 이때 정부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1993. 9. 13; 대통령령 제13,976호)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 분류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기술직렬 뿐만 아니라 행정직군도 큰 규모

3)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제2조제7호 및 동 임용령 별표1 '1급내지9급공무원직급표' 참조.

4) 「공무원임용령」, 별표 1 '1급내지9급공무원직급표'

로 정비하였다. 환경직렬을 환경직군으로 확대개편하고, 교통직렬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통신직군을 신설하여 전산직렬을 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직류로 세분하였다. 또 식품위생·의료기술직렬, 도시계획직렬, 항공우주직류를 신설하였다. 또 행정직렬을 행정·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직렬로 세분하고 국제통상직류를 신설했다. 1996년에는 식품검역직렬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공무원분류 체계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일반직공무원도 전문영역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꾸준히 직렬이 신설되고 직류가 세분화하는 흐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인력 충원에 탄력을 주려는 조직관리지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 2) 연구직 공무원 현황

연구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연구직렬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등의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이하 연구직·지도직규정)의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직급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부문의 국제환경 변화와 유전공학 등 첨단학문분야의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연구직렬과 수산연구직렬의 직류를 세분화하였고,<sup>5)</sup>

5) △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를 작물직류와 식물환경직류로 구분하고, 유전공학직류 및 농촌생활직류를 신설하였고, △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를 해양환경연구·수산자원연구·수산양식연구·수산공학연구·수산가공연구 및 수산경제직류로 세분화하였다.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1994년에는 학예연구직류를 학예일반·미술·국악 및 국어직류로 세분하였으며,<sup>6)</sup> 1996년에는 시설직군을 신설<sup>7)</sup>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운용되고 있다.

<표 2> 연구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류 현황<sup>8)</sup>

직군	직렬	직류
학예	학예연구, 편사연구	학예일반 등 5개 직류
광공업	공업연구	기계 등 9개 직류
농림수산	농업연구, 임업연구, 잠업연구, 축산연구, 가축위생연구, 농공연구, 수산연구	작물 등 17개 직류
물리	기상연구	기상 1개 직류
보건 의무	보건연구	의학 등 3개 직류
환경	환경연구	환경 1개 직류
시설	토목연구, 건축연구	토목 등 2개 직류

앞서 말했듯이 전체 공무원 882,900명(2002. 7. 31 현재) 중 연구 및 지도직은 10,518명이다. 이 중 연구직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sup>9)</sup>에 3,240명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2,300여명을 전후한 숫자의 연구직이 임용·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각 연구직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 [일부개정 1992.12.2 대통령령 제13768호]

6)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500호.

7) 일부개정 1996.7.31 대통령령 제15131호.

8)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에관한규정」 [1998. 12. 31 개정],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9)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총 61개 직제에 나타난 정원현황을 토대로 한 통계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현황인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제에 규정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구직 정원현황

직 군	직 렬	복수직급을 포함한 경우			복수직급을 포함하지 않은 최소임용의 경우		
		연구관	연구사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학 예	학예연구	123	193	316	69	154	223
학 예	편사연구	20	22	42	6	18	24
광 공 업	공업연구	254	352	606	166	258	424
농 립 수 산	농업연구	388	779	1,167	307	672	979
농 립 수 산	임업연구	69	143	212	67	143	210
농 립 수 산	잠업연구	26	48	74	8	20	28
농 립 수 산	축산연구	80	115	195	51	102	153
농 립 수 산	기축위생연구	72	139	211	54	131	185
농 립 수 산	농공연구	8	14	22		1	1
농 립 수 산	수산연구	101	210	311	91	185	276
물 리	기상연구	40	57	97	28	38	66
보 건 의 무	보건연구	274	335	609	184	284	468
환 경	환경연구	90	164	254		65	65
시 설	토목연구	10	4	14	10	4	14
시 설	건축연구	1	0	1		0	0
계		1,556	2,575	4,131	1,041	2,075	3,116

참고 : 복수직급이란 둘 이상의 직급이 복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기록보존소 직제에는 '서기관 사서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의 직급을 가진 자가 1명이 임용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직제에 '편사연구관 교육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과 같이 연구직이 앞서 규정된 경우는 복수직급을 포함한 경우로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최소한의 경우는 이런 경우의 복수직급은 제외하였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연구직으로 임용·배치된 인원이 3,240명이기 때문에 단수직급 보다 124명이 많고, 복수직급까지 모두 포함한 4,131명보다는 891명이 적다. 이 통계에 따르면 농업연구직렬이 가장 많은 수이며, 건축연구직렬이 가장 적은 수이다. 연구직 임용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현

재의 정원을 통해 소속기관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별 연구직 임용현황

각 부	각 청	연구관	연구사	계
교육인적자원부		22	47	69
법무부	검찰청	4	6	10
행정자치부		83	117	200
과학기술부		9	6	15
	기상청	28	38	66
문화관광부		85	135	220
	문화재청	25	38	63
농림부		35	100	135
	농촌진흥청	362	784	1,146
	산림청	67	135	202
산업자원부		64	53	117
	중소기업청	14	86	100
정보통신부		6	23	29
보건복지부		45	50	95
	식품의약품안전청	121	179	300
환경부		70	117	187
해양수산부		96	190	186
계		1,136	2,104	3,240

국가직공무원을 임용하게되는 총 55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해 놓은 61개의 법규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개의 기관에 연구직이 임용·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임용·배치된 기관은 농촌진흥청이고, 가장 적게 임용·배치된 기관은 검찰청이다.

주로 연구직을 임용한 곳은 소속기관이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118명, 국립국어연구원에 1명, 국립현대미술관



에 14명, 국립국악원에 13명, 국립민속박물관에 28명 등이 임용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업과학기술원 242명, 농업생명과학연구소 97명, 농업기계화연구소 63명, 원예연구소 149명, 축산기술연구소 137명, 작물시험장 104명, 호남농업시험장 85명, 영남농업시험장 89명, 고령지농업시험장 36명, 제주농업시험장 41명이 임용·배치되어 있다.<sup>10)</sup>

그리고 짐작하듯이 문화관광부의 연구직은 대부분 학예연구직이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림수산직군 여러 직렬의 연구직이 있지만 대부분 농업연구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배치되어 있다.

한편, 지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약 2,167명이 임용·배치되어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연구직이 가장 많이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시·군·구에 29명의 임용·배치된 것으로 보아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방 모두를 계산해도 2,3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따라서 지방의 연구직 및 지도직이 2002년 7월말현재 6,960명인 것으로 보아 나머지 4,660~4,700여명은 지도직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직의 경우 특히 시·군·구의 기초단체에 주로 임용되었다.<sup>12)</sup>

10) 일반직이나 별정직의 복수직급을 제외한 연구직급의 인원만을 산정한 수이다. 또 농촌진흥청의 경우 지도직과 복수직급일 경우에도 연구직이 앞서 제시되어 있는 숫자를 포함하였다.

11)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직 임용현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본문의 통계는 통계청의 'stat-korea(<http://www.stat.go.kr/>)' 참조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및 정원은 각 자치단체의 '○○(광역시·도·시·군·구)정원규칙' 및 '○○(광역시·도·시·군·구)정원조례시행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12) 예를 들어 경기도 630명, 강원도 417명, 경상남도 740명, 전라북도 472명의 지도직이 임용되어 있다. 주 11)과 같음.

<표 5>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직·지도직 임용 현황

자치단체명	기 관 구 분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서울특별시	3	158	82	243
부산광역시	0	71	58	129
대구광역시	2	59	50	111
인천광역시	0	60	27	87
광주광역시				64
대전광역시	4	40	18	62
울산광역시	1	28	13	42
경기도	1	166	28	204
강원도	2	124	20	146
충청남도	0	151	26	177
충청북도	0	111	20	131
전라남도	1	133	38	172
전라북도	1	147		148
경상남도	3	132	26	161
경상북도	2	162	28	192
제주도	2	83	23	98

참고 : 1. 자치단체의 기관구분은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구분되지만 의회사무기구에 연구직을 둔 경우는 없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 광주시의 경우는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고, 전북의 경우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합한 통계이다.

모든 시·군·구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시 1(종로구), 인천시 2, 경기도 5, 강원도 29, 충청북도 10, 경상남도 20, 경상북도 16, 전라북도 8명 등이 직제상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춘천 7, 원주 2, 강릉 4, 태백 3, 삼척 2명이고 동해, 속초,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양양에 각 1명씩의 연구직이 임용되어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임용되어 있다.<sup>13)</sup>

### 3. 일반직공무원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의 전망

공공기관에는 자료관 등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최소 1/4명 이상이라는 최소규정이다. 전문요원 배치가 유예(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4년말까지)되는 기간은 바로 목전이다. 어떤 내용으로 직렬과 직급을 법제화할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하고 직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앞에서 정리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제외)에 직렬 혹은 직류를 신설하는 즉, 행정직군에 '기록관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럴 경우는 아마 기록서기보(9급) 내지 기록서기관(4급)의 직급 및 계급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그 자격 제1의 조건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다.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록학 석사이상의 소지자가 임용시험을 통해 9급 또는 7급의

---

13)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은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등을 말하며, 사업소는 직업전문학교·문화예술회관·박물관 등등이다. 예를 들어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의 직속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와 각 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참조.

공무원이 되려고 할 것인가? 더욱이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행정일반의 직군에 말이다. 이 의문의 답은 너무 자명하다.

따라서 연구직에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은 기록물관리법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새로운 인력을 기록관리기관에 배치하여 기존의 기록관리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이 당초 법을 제정할 때의 의도였고, 그것은 법령의 각 조항에 녹아있다. 법령에는 전문요원의 역할이 폐기심의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보존가치를 판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이지도 않은 기존의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해 파기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보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도를 살린다면 1급 내지 9급의 계급체계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직으로 임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직에 직렬을 신설한다면 기록연구직렬 - 기록연구직류의 분류체계가 될 것이고 직급 및 계급은 기록연구관과 기록연구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직에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은 인정하면서도 자료관의 설치나 전문기관의 설립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의견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최소한 800여개가 넘어 그것에 각 1명씩만 배치해도 적지 않은 숫자라는 일반적인 반대논리뿐만 아니라 기관별·자치단체별 연구직의 정원과 임용현황의 기존 사례를 볼 때도 합당하지 않은 논리이다.

앞서 정리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연구직 임용 및 배치에 대한 통계를 통해 몇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영역 인력의 확충에 따라 연

구직도 직군과 직렬의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추진, 전문화·효율화를 위한 '작은정부'의 추진 등에 부응하는 조직과 인력구성이 연구직에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기록물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오직 한 기관에만 임용된 연구직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사연구직이 국사편찬위원회에만 있는 경우이다. 또 기상연구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에만 임용·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그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한지 의심스럽지만, 단 1명 혹은 1명도 없을 수 있는 직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연구직렬인데, 행정자치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소의 직제에 연구관, 건축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라는 복수직급 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복수직급의 경우도 없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수요가 불투명하여 직렬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한 논리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따라서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나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이다.<sup>14)</sup>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한다면 직급 및 계급은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

14) 한편 국회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국회인사규칙을 개정하여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 <개정 1999.12.20>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 제2항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입법조사	입법조사연구	입법조사	입법조사연구관	
		법무		
		재경		
		사회문화		
학예	기록관리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의 체계가 된다.<sup>15)</sup> 연구관은 기존의 사례에서 보듯 5급이상의 계급으로서 기록물관리학 박사학위소지, 연구사 근무경력 3년이상, 6급이상의 타직군 공무원 중 기록연구직으로 전직을 신청한 후 기록물관리기관 경력 3년이상으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사의 경우이다. 기존 연구직에 7급 혹은 8급의 계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고, 임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산시의 경우 학예연구사가 복수직급으로 별정7급상당에 3명의 정원이 있고, 대전시의 경우도 복수직급으로 별정7·8급에 각 1명씩의 정원이 있다. 이것은 직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직제에 계급에 해당하는 표현없이 그냥 연구사라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더 많게 7급이하의 연구직이 임용·배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6)</sup>

이것은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졸업이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7)</sup> 그러나 이것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경우 기록물관리법령에서

15) 기록보존직이나 기록관리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 중 '기록보존직'에 대해서는 '보존(conservation)' 그 자체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기록관리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록보존직과 같이 기록물관리의 특정한 한 부분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으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라는 것의 음절이 줄었다는 것 말고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연구직렬에 적합한 명칭도 아니다.

16) 예를 들어 羅州市의 정원에 연구직 정원이 3명이었는데, 그중 학예연구사의 직급이 7급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 2002.08.29 규칙제292호). 그런데 그 시의 공무원정원규칙에는 그냥 연구사라고 되어 있다.

17)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일부개정 1999. 5.24 행정자치부령 제53호) 제4조제1호.

제시하는 전문요원의 자격이 석사학위소지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는 데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소지자, 유관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그리고 군, 검찰, 경찰 등에서 기존 공무원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전문요원 자격의 핵심은 제1카테고리가 아닌가 한다. 즉 전문요원은 적어도 기록물관리학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연구사는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7급이상의 타직군 공무원 중 기록연구직 전직신청 후 기록물관리부서 연경력 3년 이상으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요원이 아니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전문요원에 적합한 직급으로 배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어떤 분류체계의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사실 이 발표문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해당하는 직렬의 신설이, 여건 성숙 후 검토할 사항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준비되었다.

그 결과 역시 여건 성숙 후 직렬신설이라는 견해는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이나 기존 연구직 공무원의 인력관리 흐름에도 합당하지 않은 논리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새로운 분야의 등장이나 전문인력의 수요에 맞춰 꾸준히 직렬을 신설함으로써 그

에 대응해 왔고, 최근 '작은 정부'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따른 인력 수요에는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법령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직렬을 신설하고 정원확보를 위해 직제에 반영하는 등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를 2004년말까지 유예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법제정 후 바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학 석사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력만도 수십명에 이르는 상태이다. 법제화를 위한 관련부처(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와의 협의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그 논의는 기록연구직렬의 신설로 집중되어야 한다. 연구직렬만이 기록과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전문성은 기록을 대하는 도덕적·역사적 책임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믿는다.